

이 강의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 꼭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 본인이 시청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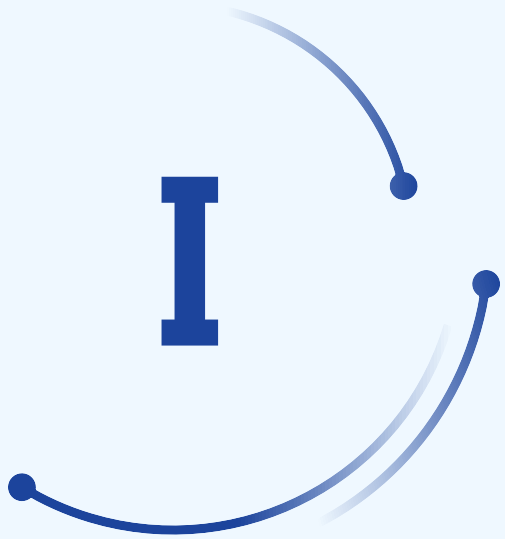


강의진행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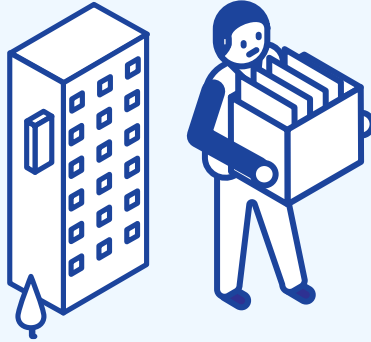
구직급여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 I 실업급여란?
- II 구직급여 관련 용어 설명
- III 구직급여 수급요건
- IV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
2. 구직신청 절차
- V 실업인정
- VI 조기재취업수당
- VII 실업급여 부정수급
- VIII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

“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실업급여의 종류

연장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의 종류



구직급여

-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
-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
- 실직자의 **생계안정** 도모 +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연장급여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경직적 측면을 해소**하고
-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 연장급여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부가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광역구직활동** 등을 하는 경우 지급
-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실비변상적인 성격



제가 신청하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제가 신청하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A.

수급자격자들이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 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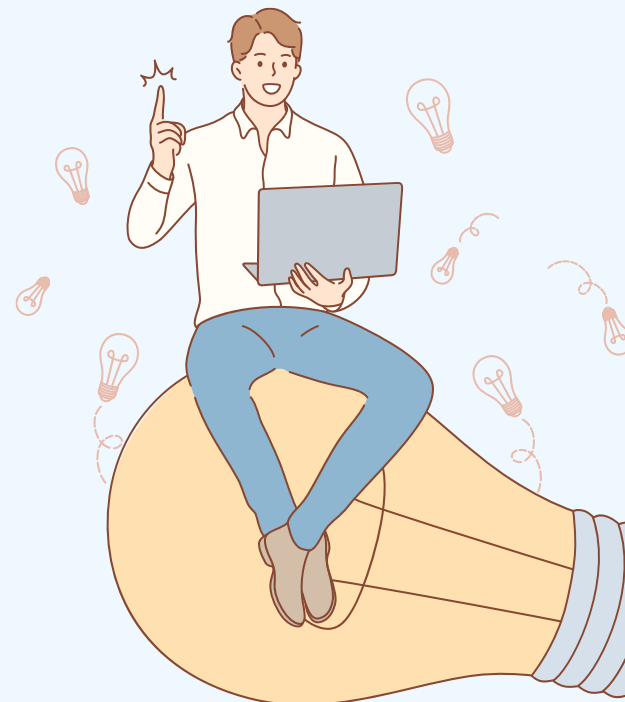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
촉진수당**



II

구직급여 관련 용어 설명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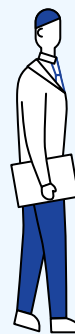
구직급여 관련 용어 설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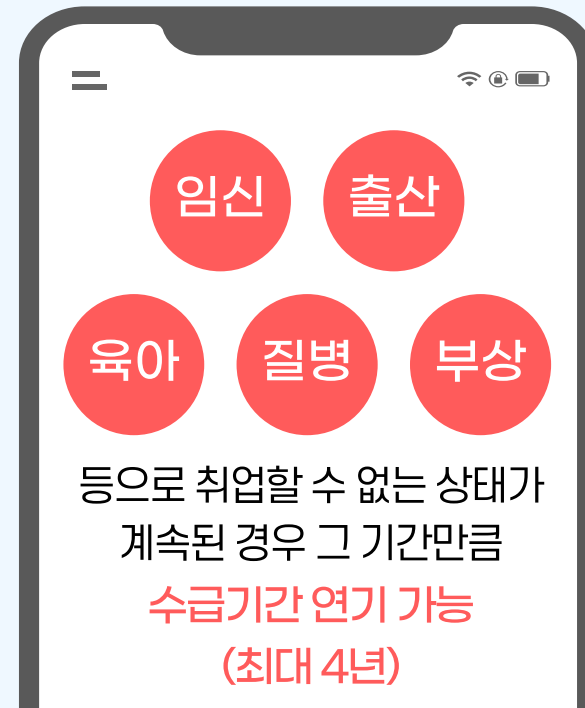
수급기간

“

이직한(자영업자는 폐업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이며,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2

구직급여일액

“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여액

1 DAY



근로자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예술인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노무제공자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 기초일액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초보수액의 합계/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의 총일수

II

구직급여 관련 용어 설명

2

구직급여일액

1 DAY



근로자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8h 이상)

30,060원 (4h 이하)



예술인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16,000원



노무제공자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26,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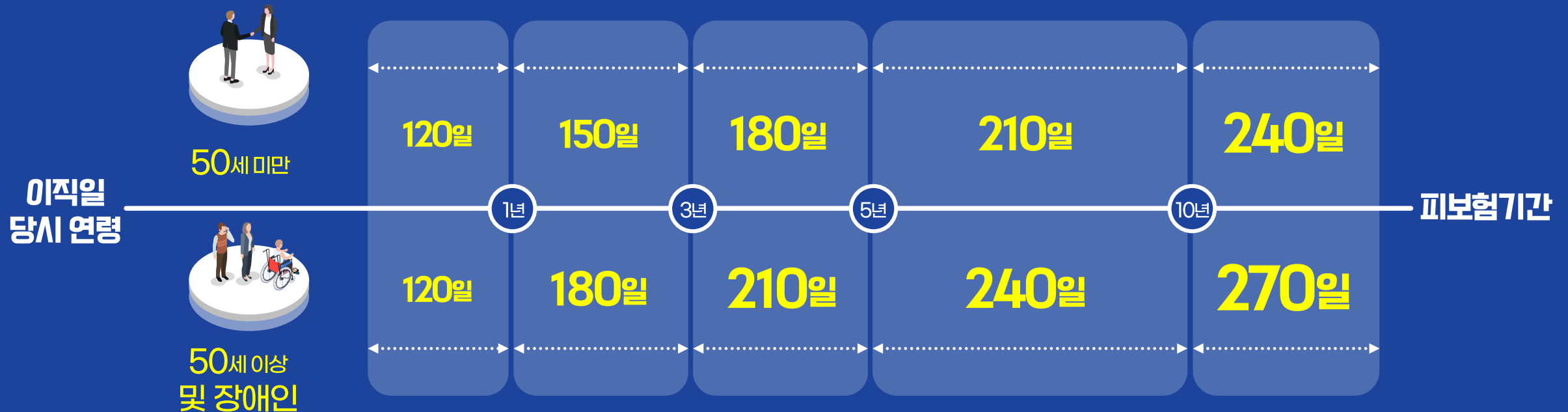


3

소정급여일수

-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짐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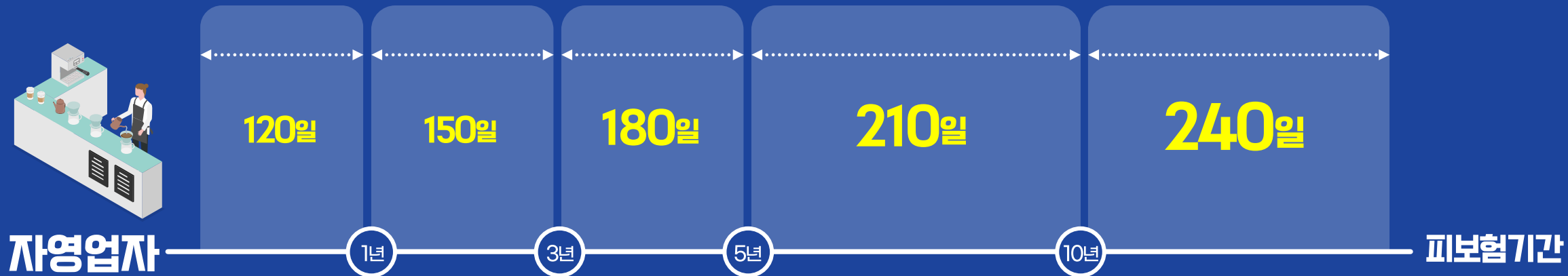
구직급여 관련 용어 설명

3

소정급여일수

-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짐

<자영업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II

구직급여 관련 용어 설명

4 대기기간

-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기기간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일정 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7일간은 대기기간



구직급여를 지급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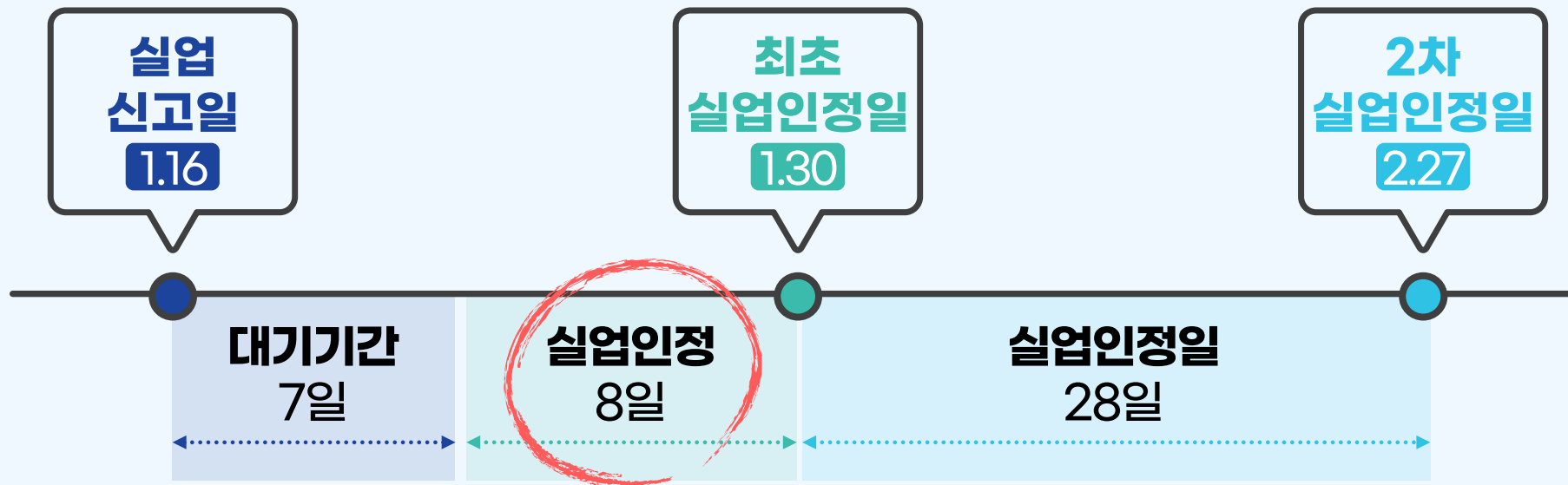
건설일용근로자



대기기간 **적용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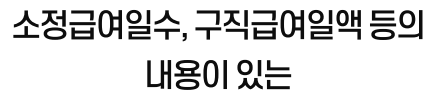
4 대기기간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는 최초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8일분을 지급
- 실업신고일~최초 실업인정일(15일) - 대기기간(7일) = **실업인정 기간(8일)**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초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15일분 지급**

5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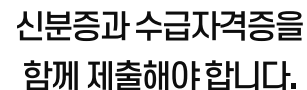
구직급여 수급 신청을 한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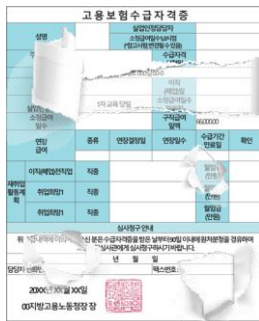
[illegible]

5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

분실 or 훼손시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수급자격증을 소중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심하게 훼손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의 '온라인
취업희망카드조회' 메뉴에 있는
수급자격증 기능도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 수급자격증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초보자 가이드와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메뉴에서 제공하는
취업희망카드 전자책 서비스를 통해 실물
취업희망카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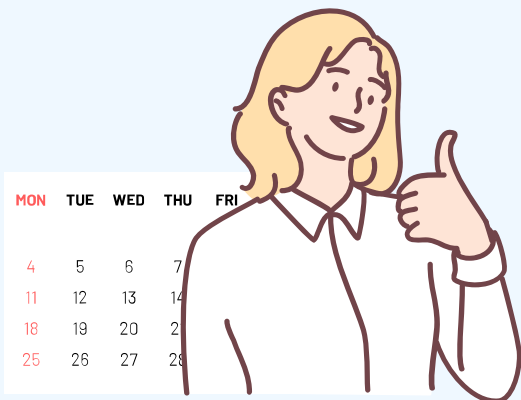


III

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충족할 것



III

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충족할 것



상용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예술인으로 최소 3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필요)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2개월
(노무제공자로 최소 3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필요)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은 무엇일까요?

III

구직급여 수급요건

Q 피보험 단위기간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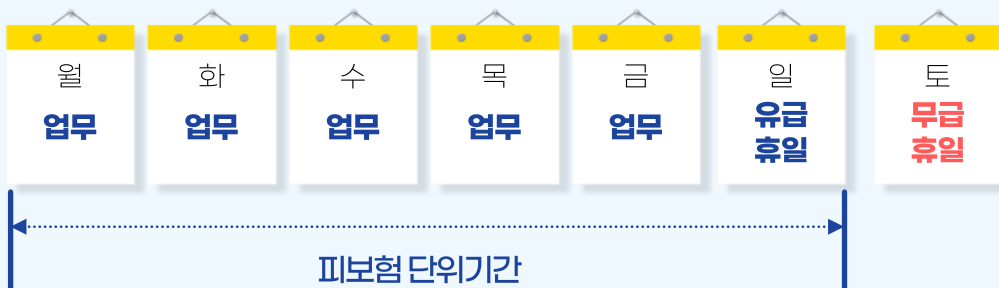
A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이 다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까지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는 유급휴일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곧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1월 한달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노무제공일수와 상관없이 31일로 산정됩니다.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



피보험단위기간 31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 한 상태일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계약만료 등 예외적인 경우 자발적 이직도 인정)



※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제69조의7에서 정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것





?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당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III

구직급여 수급요건

Q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당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사업주에게 해고된 경우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Q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였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Q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였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III

구직급여 수급요건



예술인



노무제공자



소득감소



“
정당한
이직사유

&

대기기간
길어짐
”

단,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했을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했을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더 길어지는 점** 주의하세요.

“정당한 이직사유”



예술인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보다 작을 것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 대기기간 4주(28일)



노무제공자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보다 작을 것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소득 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 대기기간 4주(28일)

소득 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 대기기간 2주(14일)

III

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일수
10일 미만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14일 연속
근로내역
없는 경우**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

※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이어야 함



**제한 사유시
90일 이상
근무**

최종 이직 당시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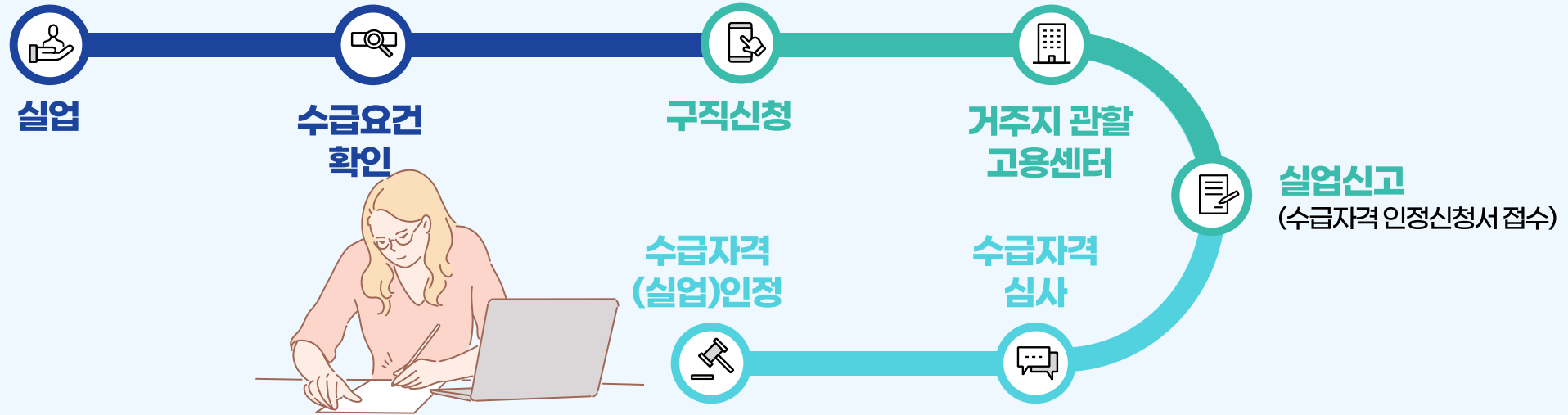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IV-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

IV-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



-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직 신청은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다만, **제출 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등 실업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IV-2

구직신청 절차

IV-2

구직신청 절차

1 워크넷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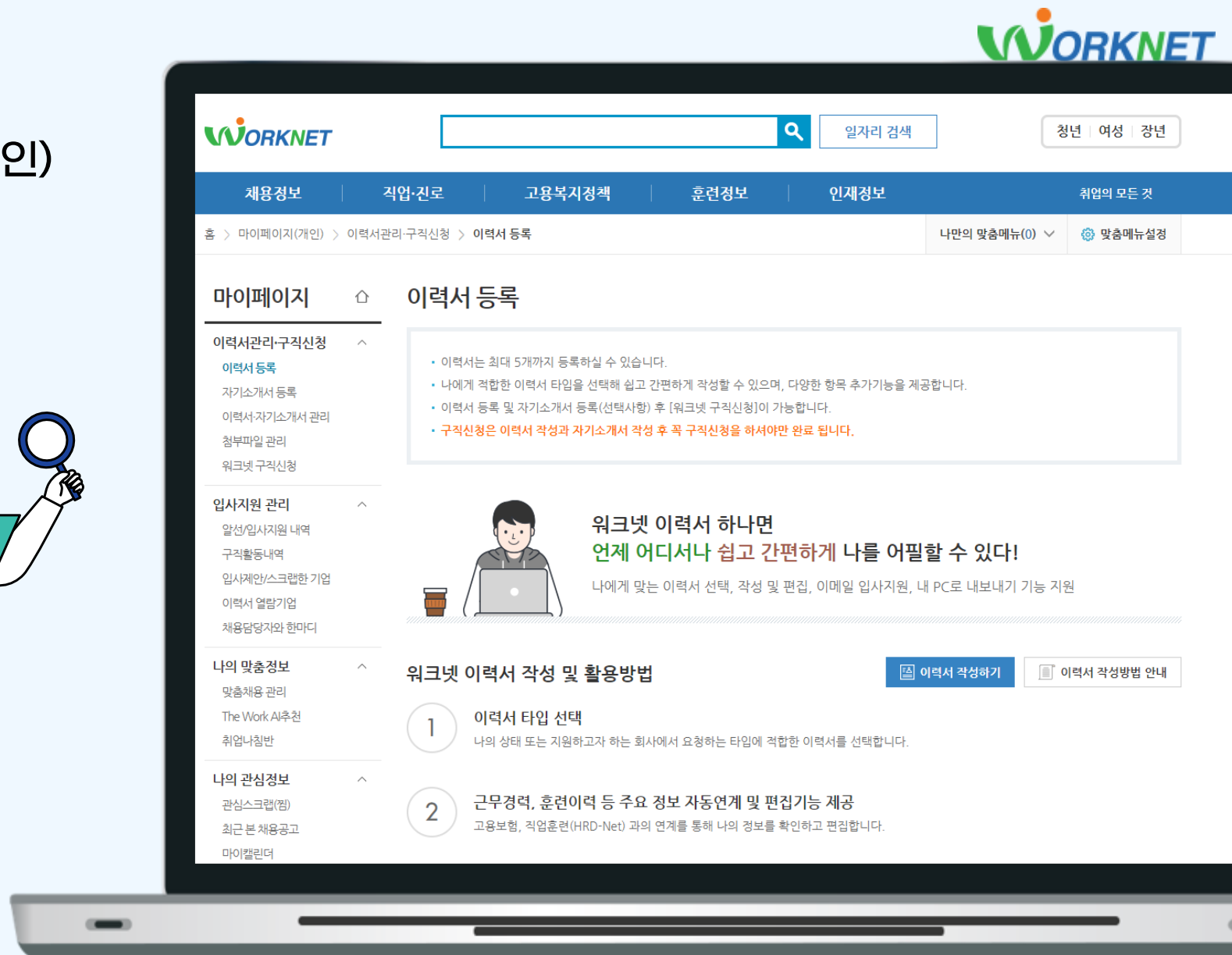
A screenshot of the WORKNET website homepage. The header includes the WORKNET logo and navigation links like '지역워크넷', '고용복지+센터', '장애인고용포털', '로그인', '회원가입', '채팅', '내일레터', '이용안내', '고객센터', '원격지원', '사이트맵', and '배너 접기'. Below the header is a search bar and a navigation menu with categories: '채용정보', '직업·진로', '고용복지정책', '훈련정보', '인재정보', and '취업의 모든 것'.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오늘의 취업뉴스' (Today's Job News) with a list of news items, '공지사항' (Notice) with a list of notices, '마감 임박 공채' (Closing Soon Public Recruitment) with a list of recruitment notices, and a sidebar on the right with '워크넷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Use WORKNET more safely and conveniently), '워크넷 로그인' (WORKNET Login), '아이디/패스워드 찾기' (Find ID/Password), '회원가입' (Sign Up), '내게 딱! 맞는 일자리 찾기' (Find the job just for me!), '구직신청' (Job Application), '우리 회사 맞춤형 인재 채용' (Recruitment of talent tailored to our company), '구인신청' (Job Opening Application), and a banner for '2분 만에 OK! 진로준비진단검사' (2-minute OK! Career Preparation Diagnostic Test). The footer includes '채용정보' (Job Information) and a list of links.

IV-2

구직신청 절차

① 워크넷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② 이력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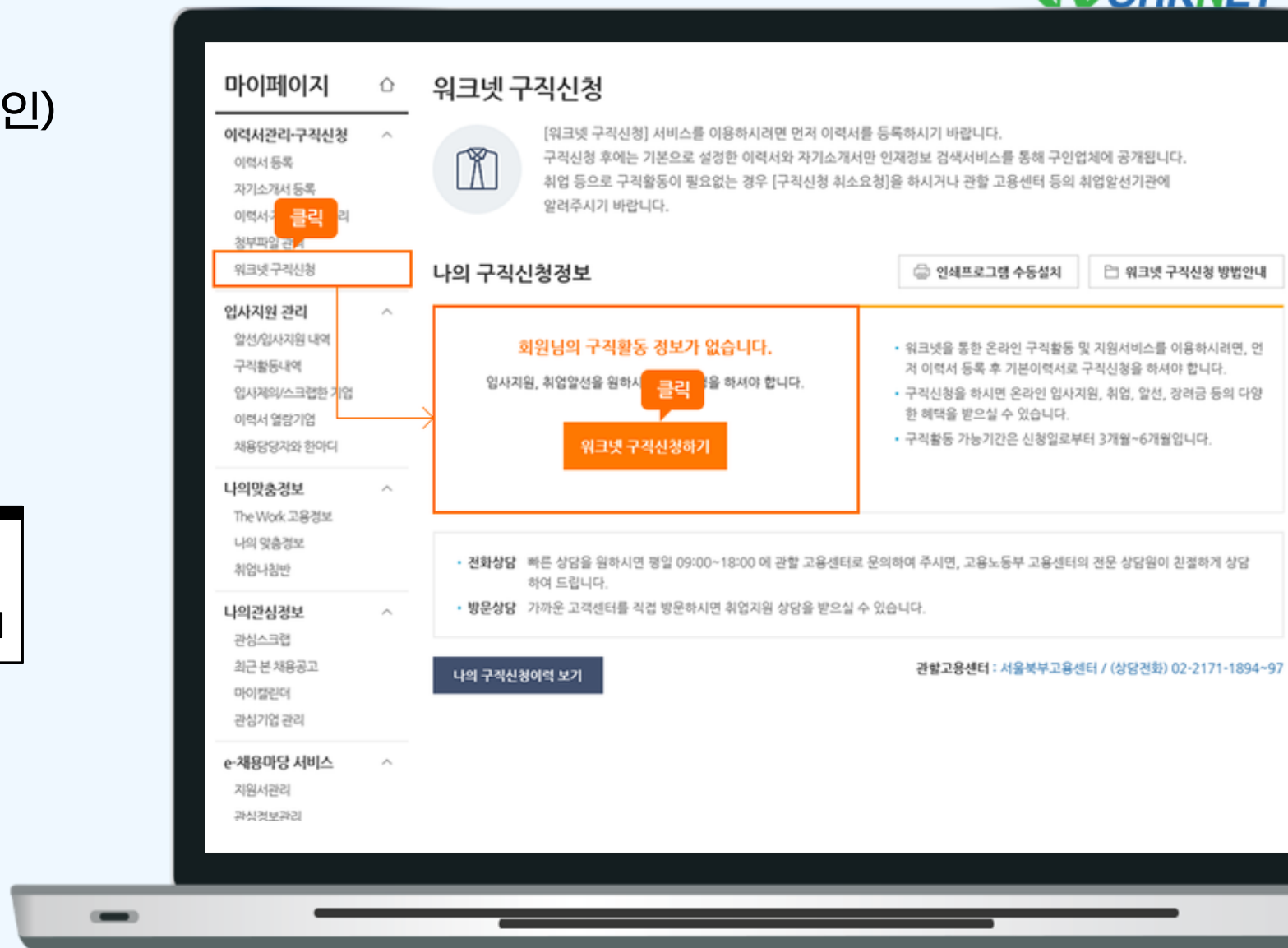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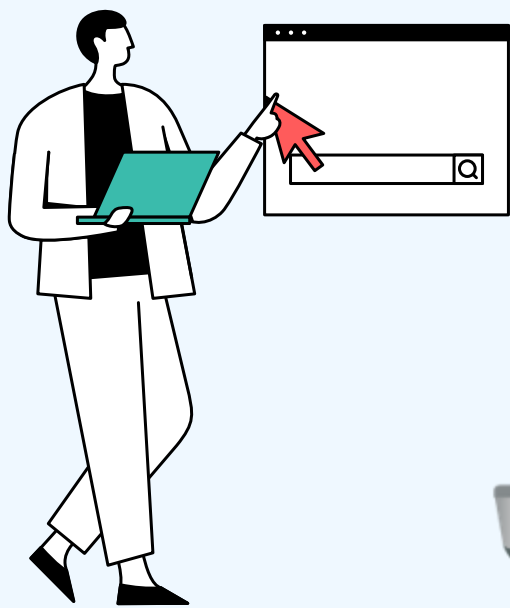


IV-2 구직신청 절차

① 워크넷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② 이력서 등록

③ 워크넷 구직신청



IV-2

구직신청 절차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자



신청 대상

- ✓ 상용근로자로 근로 후 이직한 자
- ✓ 이직사유가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정년, 계약만료 중 하나
-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 ✓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신청 제한

-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신청 온라인 교육 미완료
- ✓ 사업자등록증 소지
- ✓ 생계급여 수급자
- ✓ 산재휴업급여 수급(예정)자
-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 ✓ 취업불가자



참고 1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

IV-2

구직신청 절차



참고 2

워크넷으로 입사지원 (재취업활동)하는 법

1

희망 직종(예: 영양보호사)을
입력하고
‘일자리 검색’ 클릭

2

채용정보 상세검색에서
원하는 조건 설정

※ 워크넷 입사지원 가능 회사에 입사지원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재취업활동을 했음이 인정됩니다
(실업인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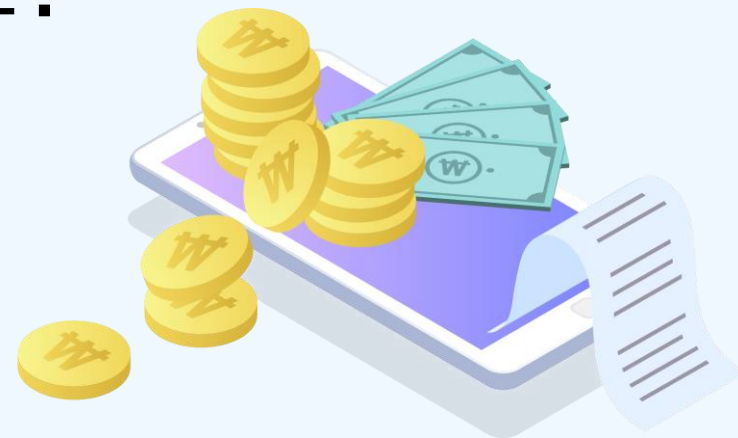
채용정보 확인 후
입사지원 클릭



V 실업인정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으면,
구직급여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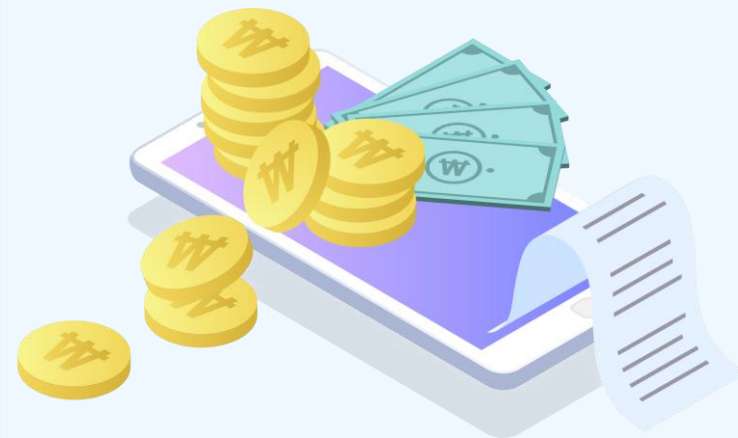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으면, 구직급여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통상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1차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 인정의 차이



?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 인정의 차이

- 수급자격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직하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재취업활동은 무엇일까요?



? 재취업활동은 무엇일까요?

-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직활동(예):**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 **구직 외 활동(예):** 직업훈련, 직업지도 참여, 취업특강 수강 등
- 한편, 허위·형식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실업인정 대상기간(통상 28일) 동안 충실하게 재취업활동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VI

조기재취업수당

VI

조기재취업수당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구직급여 수급자가

- ✓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취업하거나
- ✓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계속 사업을 영위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려면

우선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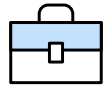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X**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84조)

-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하였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이 아님
- ✓ (지급액)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01

대기기간 내
재취업한 경우



02

최종 이직 사업장
(동일 사업주)에 재
취업한 경우



03

최종 이직 사업주와
관련 사업주(합병,
분할, 양수양도 등)에
재취업한 경우



04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 약속한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



05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06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07

소정급여일수
½ 경과 후
재취업한 경우



08

12개월간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VII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허위 신고, 은폐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허위 신고, 은폐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수사관으로부터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지급 중지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 추가징수**

부정수급액 포함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 추가징수

형사처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수급 제한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된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 고용보험수사관이란? ”

고용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직접 조사 및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고용보험수사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서류를 확인**하거나



귀하의 **카드 및 계좌 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및 거짓신고

- 1** 수급자격 신청 당시 취업을 하였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실업 상태가 아닌 경우
※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했더라도 계속 노무제공을 하고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 -> 해당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촉되어야 함
- 2** 구직급여 수급 중에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
- 3** 수급 중 자영업 영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와 달리 신고한 경우
- 4** 근로 또는 노무 제공 관련 금액(번역료, 수수료,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등)을 구직급여일액 이상으로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
- 5** 인터넷 개인 방송인,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의 활동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주요 사례

2 이직사유 거짓신고

- 1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상실신고 후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 2 이직확인서 내용(평균임금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 주요 사례

3 위장고용, 위장퇴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보험기간을 채우거나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 주요 사례

4 대리 구직급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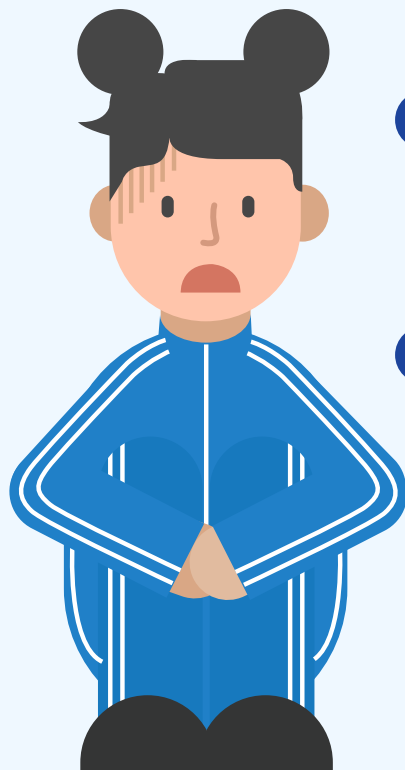
수급자 본인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인터넷, 모바일 포함)



부정수급 주요 사례

5 허위 구직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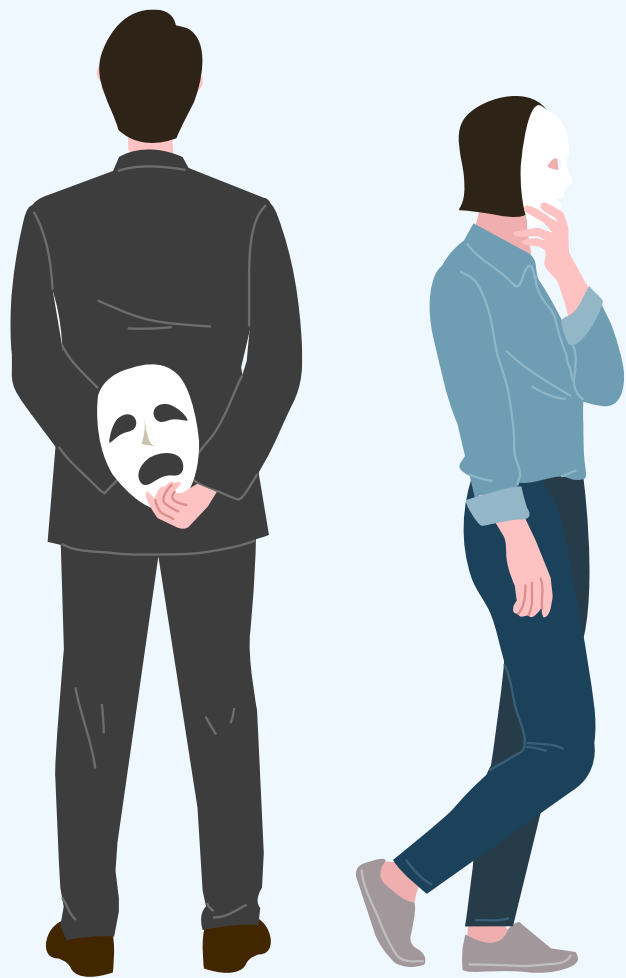
- 1 실제 구직활동은 하지 않고, 친구나 주변 식당에서 얻은 명함만을 제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 2 취업이 최종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 주요 사례

6기타

- 1 일용근로자가 수급자격 신청 이전 1개월간 혹은 14일간 근로일수 요건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2 병역복무, 산재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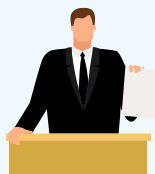
부정수급 주요 사례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및 거짓신고



2 이직사유
거짓신고



3 위장고용,
위장퇴사



4 대리
구직급여 신청



5 허위
구직활동



6 기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부정수급을 제보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합니다.

연간 약 2,000건의 부정수급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므로, 귀하의 부정수급 행위는 언제 어디서든 적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행정처분 예시]

- 실업인정대상기간(28일) 중 1일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근로한 1일분(부정수급액)만 반환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전체 구직급여(28일치) 반환
 - 단, 자진신고 시 1회에 한하여 근로 제공일인 1일치 부정수급액만 반환
-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 조치하며, 최대 5배 추가징수



VIII

자주 묻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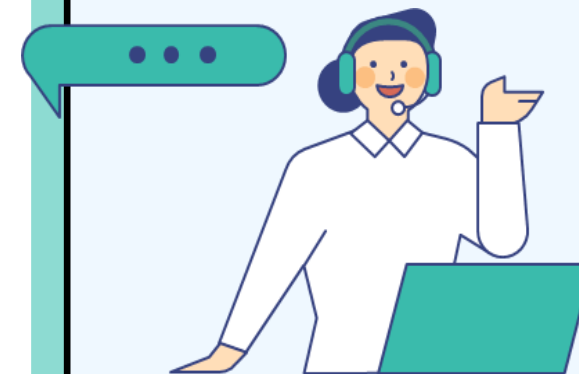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이후,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은 받았지만,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수급자격 인정은 받았지만,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수급자격은 인정받았으나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 처분청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재취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그러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 하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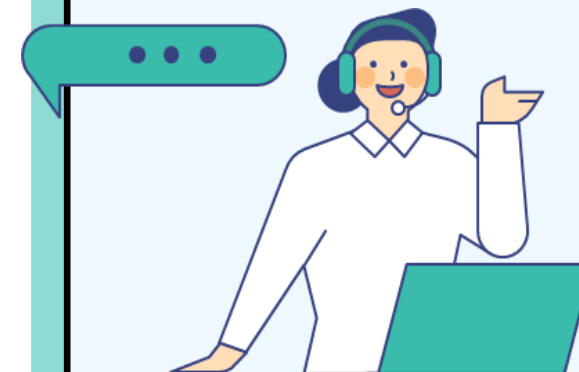


? 지금 당장 **재취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그러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 하는 건가요?

- 지금 당장 재취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단,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은 기존 수급기간인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셔야 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은 4년**까지만 허용됩니다.

수급기간 연장 허용 사유

1. 임신, 출산, 육아
2.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3.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4.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5.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6.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7.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이 내려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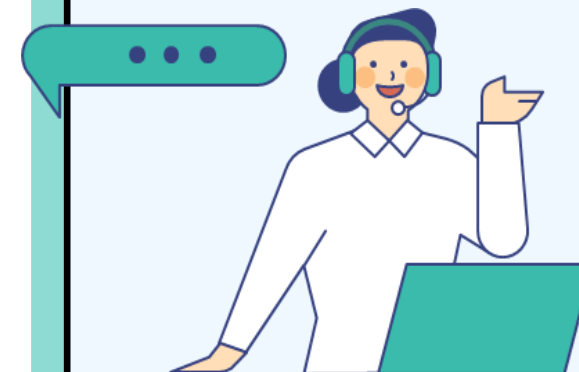
? 지금 당장 **재취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그러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 하는 건가요?

-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구직급여 수급신청 이후**에 질병·부상·출산 기간이 7일 이상이 되어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급여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상병급여 청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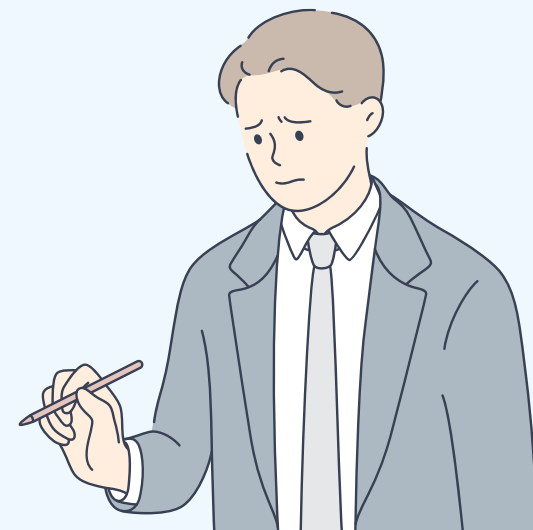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다만,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

※ 상병급여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여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는데, 이후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이 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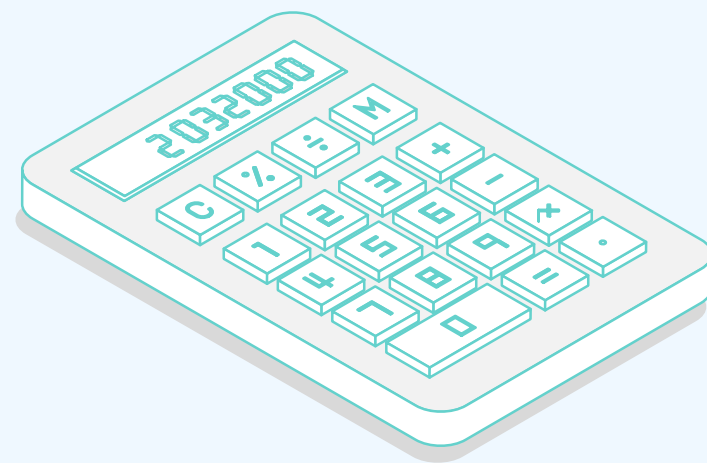
❓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는데, 이후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이 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요건 미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더라도 **여전히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즉, 소득요건 미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고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되어 이직을 해야만 실업한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의
고용보험에 대해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의 고용보험에 대해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두 개 이상의 피보험자격 유형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식〉

$$1 \leq \left[\frac{\text{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일 단위로 한다)}}{180\text{일}} \right] + \left[\frac{\text{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월 단위로 한다)}}{9\text{개월}} \right] + \left[\frac{\text{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월 단위로 한다)}}{12\text{개월}} \right]$$

- 다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3개월 이상을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함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함





근로자이면서 예술인으로 동시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근로자로 일하던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자이면서 예술인으로 동시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근로자로 일하던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로 일하던 사업장에서 이직하였더라도 예술인으로서 계속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실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근로자이면서 예술인으로 동시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두 개 다 이직하여서 실업상태라면 **이직사유와 관계 없이**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자주 묻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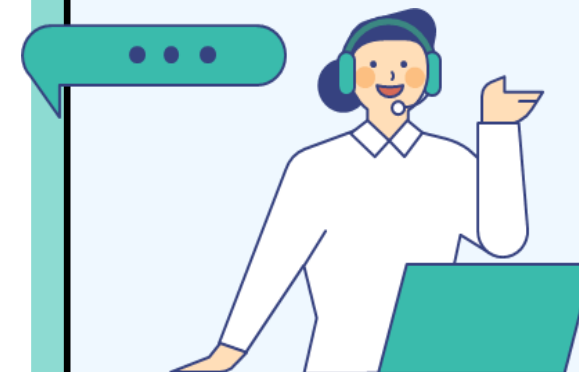


저는 근로자이면서 예술인으로 동시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두 개 다 이직하여서 실업상태라면

이직사유와 관계 없이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 구직급여를 신청한 피보험자격과 다른 유형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상실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로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 만약 근로자이면서 예술인으로 2022년 1월 6일에 동시에 이직했고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였다면
- ▼
- 예술인으로 노무제공을 하였던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와 관계 없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저는 근로자이면서 예술인으로 동시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자였던 사업장에서 먼저 그만두고 예술인이었던 사업장에서
그만둔다면 어떤 경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저는 근로자이면서 예술인으로 동시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자였던 사업장에서 먼저 그만두고 예술인이었던 사업장에서 그만둔다면 어떤 경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노무제공자, 예술인, 근로자로서 모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 또는 근로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피보험자격 유형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한 피보험자격보다 더 뒤에 다른 유형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피보험자격 유형의 마지막 이직사유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예술인 순으로 이직하였고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다면 예술인으로 노무제공을 하였던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감사합니다

